

제24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6.22)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춘 곤]

목 차

| | | |
|---|--|----|
| 1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1 |
| 2 |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3 |
| 3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18 |
| 4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 29 |
| 5 |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 | 32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5. 2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6. 03.

2. 제정이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단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보상금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방재단을 활성화하여 지역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부단장 추가함(안 제2조)
- 나. 단원 해촉 권한 변경(안 제6조)
 - 1) (현행)단장 ⇒ (변경)군수
 -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권한은 군수에게 있음

다.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기준 신설(안 제10조)

-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라.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

- 1) 재해를 입은 날,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해보상 청구
- 2)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

마. 재해보상금 수령인 선정방법 신설(안 제16조)

- 1) 유족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름
- 2) 유족 대표자 선정

바. 그 밖의 조문 순서, 내용 등 정비(전 조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별표 4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9.744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5. 8.~5. 27.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단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

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보상금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방재단을 활성화하여 지역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에서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범위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방 재정법상의 지출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방제기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0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
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
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31] [행정안전부령 제80호, 2018. 10. 31, 일부개정]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4] <신설 2018. 10. 31.>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 보상등급 | 보상금 결정 기준 | | 비고 |
|-----------------------|-----------|----------------|---|
| 요양보상 | 지방서기보 | 10호봉 봉급액 5년분 | |
| 장제보상 | 지방서기보 | 10호봉 봉급액 3월분 | |
| 유족보상 | 지방서기보 |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
|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 부상의 범 위 및 등급 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 을 준용한다. |
| | 제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 |
| | 제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 |
| | 제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 |
| | 제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
| | 제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
| | 제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
| | 제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
| | 제9급 | 유족보상금의 5/100 | |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

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04.10 조례 제17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거창군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단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단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 방재단원은 거창군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관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 및 재난관련 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방송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거창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요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5. 2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6. 03.

2. 제정이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감경근거를 마련하여 누구나 생태교육장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민이 쉽게 다가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 사용료 감경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별표 2)
 - 1) 감경대상 :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등
 - 2) 감경률 : 50퍼센트
 - 3) 감경시기 :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월·8월 제외한 기간)
- 나. 자치법규 정비대상 삭제(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4. 6.~4. 2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감경대상, 성별 구분항목 신설)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감경근거를 마련하여 생태교육장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민이 쉽게 다가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 시설사용료 50% 감경 대상으로 19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그 밖에 생태교육장 이용으로 공공복리 및 공익 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등을 위한 시설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와 주민지원사업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7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의,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 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등을 위한 시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06. 02.

나. 제 출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이홍희 · 박수자 · 신재화 · 이재운 · 표주숙

권재경 · 최정환 · 심재수 · 김종두 · 권순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06. 10.

2.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군민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위배소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구체화(안 제3조제1항)

- 1)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제4호)
- 2)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제5호)
- 3)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제6호)

- 4)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제7호)
- 5)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제8호)
- 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신청에 따른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라.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삭제(현행 제6조~제10조)
 - 1) 이유 : 지방재정법령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중복되어 지방자치법령 위배
 - 2)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마. 불필요한 규정 정비(현행 제11조~제13조)
 - 1) 수당, 준용, 시행규칙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6. 3. ~ 6. 9.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군민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위배소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
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 현행 조례에서 4가지 공사(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
비공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
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의 경우 경남도내 시 단위는 대부분
승강기를 공용시설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군민의 주거안정과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령 제720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 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 가. 지붕 | 1) 모르타르 마감 | 전면수리 | 10 | 100 | 시멘트액체방수 |
| | 2) 고분자도막방수 | 전면수리 | 15 | 100 | |
| | 3) 고분자시트방수 | 전면수리 | 20 | 100 | |
| | 4) 금속기와 잇기 | 부분수리 | 5 | 10 | |
| | 5) 아스팔트 씬글 잇기 | 전면교체 | 20 | 100 | |
| 나. 외부 | 1) 돌 붙이기 | 부분수리 | 25 | 5 | |
| | 2) 수성페인트칠 | 전면도장 | 5 | 100 | |
| 다. 외부 창문 | 출입문(자동문) | 전면교체 | 15 | 100 | |

2. 건물내부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 가. 천장 | 1) 수성도료칠 | 전면도장 | 5 | 100 | |
| | 2) 유성도료칠 | 전면도장 | 5 | 100 | |
| | 3) 합성수지도료칠 | 전면도장 | 5 | 100 | |
| 나. 내벽 | 1) 수성도료칠 | 전면도장 | 5 | 100 | |
| | 2) 유성도료칠 | 전면도장 | 5 | 100 | |
| | 3) 합성수지도료칠 | 전면도장 | 5 | 100 | |
| 다. 바닥 | 지하주차장 (바닥) | 부분수리 | 5 | 50 | |
| | | 전면교체 | 15 | 100 | |
| 라. 계단 | 1) 계단논슬립 | 전면교체 | 20 | 100 | |
| | 2) 유성페인트칠 | 전면도장 | 5 | 100 | |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 가. 예비전원 (자가발전) 설비 | 1) 발전기 | 부분수선 | 10 | 30 | |
| | | 전면교체 | 30 | 100 | |
| | | 2) 배전반 | 부분교체 | 10 | 10 |

| | | | | | |
|------------------------|-------------------------|------|----|-----|------------------------------|
| | | 전면교체 | 20 | 100 | |
| 나. 변전설비 | 1) 변압기 | 전면교체 | 25 | 100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
| | 2) 수전반 | 전면교체 | 20 | 100 | |
| | 3) 배전반 | 전면교체 | 20 | 100 | |
| 다. 자동화재 감지설비 | 1) 감지기 | 전면교체 | 20 | 100 | |
| | 2) 수신반 | 전면교체 | 20 | 100 | |
| 라. 소화설비 | 1) 소화펌프 | 전면교체 | 20 | 100 | |
| | 2) 스프링클러 헤드 | 전면교체 | 25 | 100 | |
| | 3) 소화수관(강관) | 전면교체 | 25 | 100 | |
| 마. 승강기 및 인양기 | 1) 기계장치 | 전면교체 | 15 | 100 | |
| | 2) 와이어로프, 슈브 (도르레) | 전면교체 | 5 | 100 | |
| | 3) 제어반 | 전면교체 | 15 | 100 | |
| | 4) 조속기 | 전면교체 | 15 | 100 | |
| | 5) 도어개폐장치 | 전면교체 | 15 | 100 | |
| 바. 피뢰설비 및 옥외전 등 | 1) 피뢰설비 | 전면교체 | 25 | 100 | 고휘도방전램 프 또는 LED 보안등 적용 |
| | 2) 보안등 | 전면교체 | 25 | 100 | |
| 사. 통신 및 방송설비 | 1) 앰프 및 스피커 | 전면교체 | 15 | 100 | |
| | 2) 방송수신 공동설비 | 전면교체 | 15 | 100 | |
| 아. 보일러실 및 기계실 | 동력반 | 전면교체 | 20 | 100 | |
| 자. 보안·방법 시설 | 1) 감시반 (모니터형) | 전면교체 | 5 | 100 | |
| | 2) 녹화장치 | 전면교체 | 5 | 100 | |
| |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 전면교체 | 5 | 100 | |
| 차.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 1) 홈네트워크기기 | 전면교체 | 10 | 100 | |
| |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 전면교체 | 20 | 100 | |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

| | | | | | |
|---------|------------------------|------|----|-----|------------------------------|
| 가. 급수설비 | 1) 급수펌프 | 전면교체 | 10 | 100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
| | 2) 고가수조 (STS, 합성수지) | 전면교체 | 25 | 100 | |
| | 3) 급수관(강관) | 전면교체 | 15 | 100 | |
| 나. 가스설비 | 1) 배관 | 전면교체 | 20 | 100 | |
| | 2) 밸브 | 전면교체 | 10 | 100 | |
| 다. 배수설비 | 1) 펌프 | 전면교체 | 10 | 100 | |
| | 2) 배수관(강관) | 전면교체 | 15 | 100 | |
| | 3) 오배수관(주철) | 전면교체 | 30 | 100 | |
| | 4) 오배수관(PVC) | 전면교체 | 25 | 100 | |
| 라. 환기설비 | 환기팬 | 전면교체 | 10 | 100 | |

5. 난방 및 급탕설비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 가. 난방설비 | 1) 보일러 | 전면교체 | 15 | 100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
| | 2) 급수탱크 | 전면교체 | 15 | 100 | |
| | 3) 보일러수관 | 전면교체 | 9 | 100 | |
| | 4) 난방순환펌프 | 전면교체 | 10 | 100 | |
| | 5) 난방관(강관) | 전면교체 | 15 | 100 | |
| | 6) 자동제어 기기 | 전체교체 | 20 | 100 | |
| | 7) 열교환기 | 전면교체 | 15 | 100 | |
| 나. 급탕설비 | 1) 순환펌프 | 전면교체 | 10 | 100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
| | 2) 급탕탱크 | 전면교체 | 15 | 100 | |
| | 3) 급탕관(강관) | 전면교체 | 10 | 100 |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 옥외부대시설 | 1) 아스팔트포장 | 부분수리 | 10 | 50 | |

| | | | | |
|---------------|--------------------------|------|-----|-----|
| 및 옥외 복리 시설 | 2) 울타리 | 전면수리 | 15 | 100 |
| | 3) 어린이놀이시설 | 전면교체 | 20 | 100 |
| | | 부분수리 | 5 | 20 |
| | 4) 보도블록 | 전면교체 | 15 | 100 |
| | | 부분수리 | 5 | 10 |
| | 5) 정화조 | 전면교체 | 15 | 100 |
| | | 부분수리 | 5 | 15 |
| | 6) 배수로 및 맨홀 | 부분수리 | 10 | 10 |
| | 7) 현관입구·지하주차 장 진입로 지붕 | 전면교체 | 15 | 100 |
| | 8) 자전거보관소 | 전면교체 | 10 | 100 |
| | 9) 주차차단기 | 전면교체 | 10 | 100 |
| 10) 조정시설물 | 전면교체 | 15 | 100 | |
| 11) 안내표지판 | 전면교체 | 5 | 100 | |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 | | | | |
|-------------------|---|---|---|---------------|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 | $\frac{\text{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text{총공급면적} \times 12 \times \text{계획기간(년)}}$ | ×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 2. 5.] 제24조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1. 2. 5.] 제24조의2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

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5. 2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6. 03.

2. 제안이유

- 가.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조성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고제면, 마리면, 남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추진개요

| 상호(발전소명) | 대표자 | 설치용량(kW) | 전체(설치)면적(m ²) | 설치장소 | 비고 |
|---------------------------|-----|----------|---------------------------|--------------------------|----|
| 고제베짱이사랑방 태양광발전소 | 오덕희 | 29.97 | 4,416(148) | 고제면 봉계리 85-1 (주차장 위) | |
| (주)마리권역사업 운영위원회 태양광발전소 | 이국재 | 29.97 | 183(145) | 마리면 말흘리 217-4 (주차장 위) | |
| (주)참깨비마을권역사업 운영위원회 태양광발전소 | 유영준 | 29.97 | 8,449(142) | 남하면 지산로 727-13 (건물 위) | |

나. 필요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재정적 문제로 사후관리 어려운 실정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운영 기대 (연간 수익 7백만원/개소당)

다. 향후 추진계획

- 2020. 7.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행복농촌과)

4. 참고사항[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군 의회가 심의할 내용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관련법규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지방의회 동의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 시설 등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필요한 조례 정비 후 의회 동의를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로 특정단체를 선정해야 하는 내용과 수익금 사용용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1.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주민조례제정 청구)
- 다. 회부일자 : 2020. 04. 07.

2. 제정이유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농민수당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다. 지급대상, 방법, 지급액 등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

라. 지급신청, 절차, 지원제외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 조치 : 예산 확보 예정

다. 기타 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주민조례청구 절차 : 붙임 1
- 3) 비용추계서 : 붙임 2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본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액, 지급대상(농가 또는 농민),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거창군의 재정상황과 경상남도와의 부담비율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에게는 정책적으로 그 대가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2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

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기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4. 1.>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 12.>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1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